

강원도민일보

뉴스 지역 원주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필요”

사업허가 간편 우후죽순 설치
주거지와 거리 20m 불과
주민, 소음 등 불편 가중 우려

박성준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주 곳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가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원주지역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348건으로 이중 70% 이상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급 이하로 주택과 농지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다.

이같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전기사업법을 적용받아 사업수행능력만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법 상 광고탑 등과 같은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아 설치높이 제한 및 면적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사업자와 지역민간 마찰 원인이 되고 있다. 부론면 세포마을은 민간사업자가 주민주거지와 불과 20m 거리에 500kW급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자 주민들은 소음 등의 이유로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인근 횡성군의 경우 도로·주거밀집지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원주시의 경우 이같은 조례가 없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무해한 시설이라도 내 집 옆에 들어서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며 “이격거리 제한 등 조례를 제정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준의 다른 기사보기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7년 9월 27일 기사입니다.

[정선]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 제동

올해 11개 단지 승인·심의
토사유출·붕괴 위험 지적
정선군 조례 개정안 마련
조성기준 허가 규제 강화

【정선】 정선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군은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며 주민과의 갈등, 토사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난 위험이 커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조성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사면 길이가 40m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 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군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절토 및 성토로 인한 비탈면의 경우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나무를 베어낸 뒤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지에도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군은 그동안 전체 사업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일 경우 사업 예정지 내의 경사도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허가해줬다.

군 관계자는 “산비탈이 심한 지역에서도 전체 평균이 20도 이하일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붕괴 등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선에는 올해 5개 단지 15만㎡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6건 16만8,171㎡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명우기자



인쇄하기

닫기

서산서 태양광시설·무인텔 건립 어려워진다...시의회 조례개정

기사입력 2017/07/18 16:52 송고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태양광시설과 무인텔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서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시의회는 18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 외곽이나 임야 등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시설과 무인텔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해 자연경관을 보존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시설은 보전녹지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서산에는 저렴한 땅값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소음 발생 등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숙박시설인 모텔이나 무인텔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농촌 정서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농촌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무인텔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올해 245건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675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났으나 민원 등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10.1%인 68건에 그친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달 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min36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6:5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닫기

사천시, 태양광발전소 난립 막는 조례 만들었다

기사입력 2017/03/13 16:22 송고

인구 밀집지역·도로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가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으려고 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가 13일 열린 '제2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등)에서 직선거리 3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10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져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시에는 70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면서 환경 파괴 등 민원이 잇따라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라며 "이 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환경 훼손을 막고 시민에게 제공할 편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연합뉴스 자료사진]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3 16:22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홈 > 뉴스 > 지역 > 의령

의령군의회 조례로 태양광발전소 난립 막다

인구 밀집지역 200m·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

2017년 06월 21일 (수) 15:10:31

김영찬기자 ✉ jt0071@hanmail.net



▲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철호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으려고 조례안을 개정했다.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의령군 나선거구)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으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현재 군에는 16여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인쇄하기 ☒ 창닫기

주소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08000596>

경남거창군 무분별 태양광 발전시설 제동 조례 제정

경남 거창군은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를 제정했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거창군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관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거리가 100m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등에서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 울타리(헨스, 차폐수)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등이다.

또 완화규정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2017-05-09 03:00:00

세계일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

함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난립 제동

군, 부작용 차단 조례제정 나서

국제신문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입력 : 2016-08-29 20:16:12 | 본지 12면

-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전망
- 5가구 이상 주거지 건립 불허
- 국도·군도·지방도 1km 내도 안 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지의 무분별한 입지 탓에 경남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본지 지난 18일 자 11면 보도)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이다.

함양군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양군계획조례 개정안'(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을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군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또 경지정리가 된 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함양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전기 판매 수익성도 높아진 데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지 입지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함양군 백전면 평정마을의 경우 주택과 50m 떨어진 곳에 최근 19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 서상·사하면 등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3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군에서, 300kW 이상은 경남도가 각각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함양군에는 3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27개소와 300kW 이상 시설 35개 등 총 6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가 난 상태다.

산청군에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무려 150건에 이르고 있다.

또 산청군 금서면 쌍재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곳에는 D건설이 15만여 ㎡의 임야에 24.15MW를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발전기 총 7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D건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산청군에 발전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소음과 저주파 피해, 자연환경 파괴 등을 내세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 규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 해소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